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76
----------	-----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목적, 계정구분(안 제1조 ~ 제2조)
- 나. 재원과 용도, 회계공무원,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3조 ~ 제6조)
- 다. 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안 제7조 ~ 제9조)
- 라.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기간의 계산(안 제10조 ~ 제11조)
- 마. 관계규정의 준용, 시행규칙, 존속기한(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9.3.~2020.9.2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실-11318, 2020.9.14.)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11318, 2020.9.14.)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요청(복지과-54180, 2020. 9. 9.)

- 전부반영(‘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용자하는 기능을 한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용자
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납액의 합이 최근 3년 경상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경상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또는 공유재산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재정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두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실장이 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기금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재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단,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용자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 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받은 날 및 용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또는 용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금상환·환수)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및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예탁한 재원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환수한다.

제4조(자금이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평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

관련 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 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실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065